

안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(안)

의안 번호	1663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08. 3. .
발 의 자 : 강기태의원 외 10인

제안이유

- 교통약자(장애인, 임산부, 고령자, 영유아동반자, 어린이등)들이 사회적 편견에서 벗어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 체계를 인간중심으로 구축하여 교통약자의 사회참여 보장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.

주요내용

- 가. 교통약자의 효율적인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위원회설치 및 이동지원센터를 설치운영(안 제4조, 안 제10조).
- 나. 법에서 정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(안 제7조).
- 다.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예산의 확보, 기타 제반시설 정비 및 행정적 조치 등 강구(안 제8조).
- 라. 특별교통수단의 도입 및 운영에 관한 행정적 조치 등 강구(안 제13조).

제정조례안 : 별첨

관계법령발췌서 : 별첨

예산수반사항

○ 저상버스구입비 ----- 30,420백만원
(국비8,450, 도비4,225, 시비4,225, CNG보조4,563, 자부담8,957)

· 저상버스 추가 구입대수 : 169대
- 577대(안산시 총버스대수)*1/3 - 23대(현행 저상버스대수) =169대

· 1대당 저상버스 구입에 따른 예산 소요액 : 180,000,000원
(국비 50,000천원,도비 25,000천원, 시비 25,000천원, CNG 보조 27,000천원,
사업자부담 53,000천원)

※ 1대당 저상버스 구입에 따른 지원기준액 : 100,000천원
(국비50%, 도비25%, 시비25%)
- 자부담 80,000천원(CNG 보조 27,000천원, 사업자부담 53,000천원)

○ 특별교통수단-휠체어탑승설비차량 ----- 7,500백만원
- 50대 × 150,000,000원 × = 7,500,000,000원

○ 위원회 참석수당(년간) ----- 4,200천원
- 10명 × 70,000원 × 6회 = 4,200,000원

기타 참고사항 : 별첨

○ 「평택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」 1부

안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안산시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을 보장함으로써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하여 사회참여의 보장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「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따른다.

제3조(적용범위)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하여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 이외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4조(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) 교통약자의 효율적인 이동편의증진을 위하여 안산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두고,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계획 수립 및 사업평가에 관한 사항
2. 이동지원센터의 설치,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
3. 이동지원센터 위탁에 관한 사항
4. 특별교통수단의 종류 및 운임에 관한 사항
5. 그 밖에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에 관련되어 필요한 사항

제5조(위원회의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, 필요할 경우 민간위원 중 1인을 호선하여 부위원장을 둘 수 있다.

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 다만 제3호의 위촉직 위원은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.

1. 부시장, 도시교통국장, 주민생활지원국장은 그 직에 재직하는 동안 당연직 위원이 된다.
2. 의회에서 추천하는 소속 시의원 2인
3. 장애인·노인·여성·아동 등 교통약자 관련 각 단체에서 3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사람
4. 교통관련 분야의 교수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
-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- ⑤ 위원회는 분과위원회를 두고 운영할 수 있다.
- ⑥ 위원회의 간사는 대중교통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.

제6조(위원회의 운영)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하되, 정기회의는 반기 1회 개최하고, 임시회는 필요시 수시 개최한다.

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·관리하여야 한다.

④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있어 발생하는 사항은 시의 여타 위원회 운영의 관례에 따른다.

제7조(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) ① 시장은 5년 단위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법 제6조제2항외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.

1. 저상버스 도입계획과 운영계획
2. 이동지원센터의 설립과 운영계획
3. 특별교통수단의 제공과 운영계획
4. 시 여객시설의 조사와 개선 계획
5. 교통약자의 이동 실태에 대한 실태조사

6. 보행환경 정비와 개선계획
7.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이동편의정보 제공 및 개선 계획
8. 저상버스 및 버스운전자,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에 대한 교육 계획
9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제8조(저상버스 도입 계획) ① 시장은 저상버스 도입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.

1. 저상버스 도입을 위해 필요한 예산의 확보
 2.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버스 정류소 및 보도의 정비
 3.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도로의 정비
 4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- ② 노선버스운송사업자는 매년 교체되는 버스차량의 일정비율을 저상버스로 대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③ 시장은 저상버스를 도입할 경우에 노선버스운송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송사업자에게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9조(저상버스의 운영) ① 시장은 저상버스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.

- ② 시장은 저상버스의 올바른 운영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를 홍보하고 교육하여야 한다.
- ③ 저상버스를 운영하는 노선버스운송사업자 및 운전자에 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.

제10조(이동지원센터의 설치) ①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 연계를 위하여 이동지원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- ② 이동지원센터는 1년 365일, 09:00부터 18:00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하되 수요자 발생 시 운영자는 운영시간을 연장 운영하여야 한다.
- ③ 이동지원센터의 보유 차량은 휠체어 사용자가 승·하차하기 편리

한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.

④ 시장은 이동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.

제11조(이동지원센터의 기능) 이동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자의 신청 접수
2. 특별교통수단인 차량 운행
3.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자에 대한 등록
4.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
5. 교통약자의 이동지원 운전자 및 관련자에 대한 안내·상담 및 교육
6. 교통약자의 이동수단 및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종합정보망의 구축 및 홍보
7. 그 밖의 이동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

제12조(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및 위탁) ① 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시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자격을 갖춘 단체 및 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1. 특별교통수단의 관리 및 운영
 2. 이동지원센터의 운영
- ② 위탁운영자의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으로 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 운영자를 결정한다.
- ③ 위탁운영자의 심사항목에는 공신력 및 전문성,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사업운영실적, 특별교통수단의 관리 및 운행, 이동지원센터 운영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.

제13조(특별교통수단의 운영) ① 특별교통수단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한 차량을 말한다.

② 시장은 매년 일정한 비율로 특별교통수단 차량을 도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- ③ 특별교통수단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는다.
1. 제10조제2항과 같이 운영한다.
 2. 예약제로 운행하며 장기이용도 가능하다.
 3. 운행구역, 이용시간 등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.
 - ④ 제3항에 따라 운영상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 - ⑤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동지원센터에 전화, 서면 또는 전산 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청한다.
 - ⑥ 특별교통수단은 교통약자 이용자가 목적지까지 이동하는 것을 지원해야 한다.
 - ⑦ 특별교통수단의 운전자는 이용자의 승하차를 지원하여야 한다.
 - ⑧ 특별교통수단에는 교통약자가 휠체어를 탄 채 승차할 수 있는 휠체어리프트 또는 휠체어 기증기 등의 승강설비, 휠체어 고정설비 및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.

제14조(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) ①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는 다음과 같다.

1. 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」 제2조제1항에 따른 1급 또는 2급 장애인으로서 버스, 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
 2. 65세 이상으로 버스, 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
 3. 제1호 및 제2호 외의 교통약자 중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과 혼자서 외출 및 이동이 어려운 사람
 4. 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
 5. 그 밖에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
- ② 특별교통수단의 이용 및 신청에 관한 사항과 이용자 선정의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15조(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 및 대수) ① 특별교통수단의 이용 요금은 대중교통수단의 환승할인 이용요금에 준하여 부과하고 대중교통수단 이용금액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.

- ② 시장은 제1항의 범위 안에서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을 정하여

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고시한다. 요금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.

③ 특별교통수단의 차량 수는 법 제16조제1항과 법 시행규칙 제5조를 기준하여 안산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서 정한다.

제16조(예산의 확보)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사업의 재정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
제17조(수당 및 여비)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「안산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」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18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안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1663
----------	------

제안년월일 : 2008. 5. 22.

제안자 : 도시건설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위원회의 구성원중 부위원장 선임 범위를 넓혔고, 교통약자 관련 단체 종사자의 경력을 강화하고, 시장의 특별교통수단 도입을 강제함.

2. 주요 골자

- 위원회의 구성원 중 부위원장의 선임범위를 넓혔고, 교통약자 관련 단체 종사자의 경력을 강화함(안 제5조).
-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수행사항을 정비함(안 제8조).
- 이동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함(안 제11조).
- 시장의 특별교통수단 차량 도입을 강제하고,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함(안 제13조).

안산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안산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5조제2항 중 “민간위원”을 “위원”으로 하고, 동조제3항제3호 중 “3년”을 “5년”으로 한다.

제8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저상버스 운영을 위한 버스 정류소와 도로 및 보도의 정비
제8조제1항제3호를 삭제하고, 동조동항제4호를 제3호로 한다.

제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③ 시장은 저상버스를 운영하는 노선버스운송사업자 및 운전자에 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.

제11조제3호 중 “등록”을 “자격심의”로 한다.

제13조제2항 중 “도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”를 “도입한다.”로 한다.

제13조제3항제3호를 삭제한다.

조 문 대 비 표

원 안	수 정 안
<p>제5조(위원회의 구성) ① (생략)</p> <p>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, 필요할 경우 <u>민간위원</u> 중 1인을 호선하여 부위원장을 둘 수 있다.</p> <p>③ (생략)</p> <p>1. ~ 2. (생략)</p> <p>3. 장애인·노인·여성·아동 등 교통약자 관련 각 단체에서 <u>3년</u> 이상의 경력을 갖춘 사람</p> <p>4. (생략)</p> <p>④ ~ ⑥ (생략)</p>	<p>제5조(위원회의 구성) ① (원안과 같음)</p> <p>②</p> <p><u>위원</u></p> <p>.....</p> <p>③ (원안과 같음)</p> <p>1. ~ 2. (원안과 같음)</p> <p>3.</p> <p>.....<u>5년</u>.....</p> <p>.....</p> <p>4. (원안과 같음)</p> <p>④ ~ ⑥ (원안과 같음)</p>
<p>제8조(저상버스 도입 계획) ① (생략)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<u>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버스 정류소 및 보도의 정비</u></p> <p>3. <u>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도로의 정비</u></p> <p>4. (생략)</p> <p>② ~ ③ (생략)</p>	<p>제8조(저상버스 도입 계획) ① (원안과 같음)</p> <p>1. (원안과 같음)</p> <p>2. <u>저상버스 운영을 위한 버스 정류소와 도로 및 보도의 정비</u></p> <p>〈삭 제〉</p> <p>3. (원안 제4호와 같음)</p> <p>② ~ ③ (원안과 같음)</p>
<p>제9조(저상버스의 운영)</p> <p>① ~ ② (생략)</p> <p>③ <u>저상버스를 운영하는 노선버스운송사업자 및 운전자에 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.</u></p>	<p>제9조(저상버스의 운영)</p> <p>① ~ ② (원안과 같음)</p> <p>③ <u>시장은 저상버스를 운영하는 노선버스운송사업자 및 운전자에 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.</u></p>

조 문 대 비 표

원 안	수 정 안
<p>제11조(이동지원센터의 기능) (생략)</p> <p>1. ~ 2. (생략)</p> <p>3. <u>특별교통수단의 이용자에 대한 등록</u></p> <p>4. ~ 7. (생략)</p> <p>제13조(특별교통수단의 운영)</p> <p>① (생략)</p> <p>② <u>시장은 매년 일정한 비율로 특별교통수단 차량을 도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③ (생략)</p> <p>1. ~ 2. (생략)</p> <p>3. <u>운행구역, 이용시간 등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.</u></p> <p>④ ~ ⑧ (생략)</p>	<p>제11조(이동지원센터의 기능) (원안과 같음)</p> <p>1. ~ 2. (원안과 같음)</p> <p>3. <u>특별교통수단의 이용자에 대한 자격심의</u></p> <p>4. ~ 7. (원안과 같음)</p> <p>제13조(특별교통수단의 운영)</p> <p>① (원안과 같음)</p> <p>② <u>시장은 매년 일정한 비율로 특별교통수단 차량을 도입한다.</u></p> <p>③ (원안과 같음)</p> <p>1. ~ 2. (원안과 같음)</p> <p>< 삭제 ></p> <p>④ ~ ⑧ (원안과 같음)</p>